

「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 : 김민성 의원 외 6인

3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 범위 확대와 인상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수당 인상 (안 제8조제1항, 제8조제3항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,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의 인상과 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보훈보상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하여 구미시 차원에서 예우수당 지급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은 당사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수당 인상과 범위 확대로 소요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재정 여건을 고려한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대상자 추가에 따른 대상자 확인·관리 과정에서 중복 또는 오지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임. 또한, 향후 유사 수혜 대상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훈예우 정책이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.